KOSHA GUIDE

C - 44 - 2015

- (4) 달대비계에는 최대 적재하중과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.
- (5) 달대비계는 적절한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고,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
7.2 재료 적치장소와 통로

- (1) 철골 세우기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, 공구, 용접기 등을 쌓아놓는 장소와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, 구체공사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(2)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,000 m²에 1개소를 설치하고, 그 면적은 50 m²이상이어야 한다. 또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 간 상호 연락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장 설치위치는 크레인의 선회범위 내에서 수평운반거리가 가장 짧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(4) 계획상 최대적재하중과 작업내용,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자재의수량, 배치방법 등의 제한요령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(5) 철골조의 바닥에는 철판을 부설하여 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나, 재료를 쌓아 둘 수는 없으므로 통로와는 별도로 재료를 쌓아 놓기 위한 적치대를 설치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건물 외부로 돌출된 작업장은 적재하중과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자의 추락 및 자재의 낙하·비래방지를 위하여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(7) 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통로 양측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